성주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

1. 제 안 자 : 김성우 의원 외 6인

2. 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'22.1.13. 시행)으로 성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성주군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,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성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,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나.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및 위반자 문책에 관한 사항
(안 제3조, 제4조)

다. 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」 등

○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1. 12. 17. ~ 12. 21.)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규칙안은「지방자치법」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성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으로,

○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 사유, 위반자 문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본 규칙을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